

#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97
----------	-----

2019년 9월 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 건 명: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
- 의안번호 : 제997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9월 6일 상정 (원안동의)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최윤종 국장)

#### 가.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1)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내용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의 변경
  - ※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공원구역) 기본계획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공원	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시 <b>공원구역 지정</b>
GB 제외여부	도시자연공원 중 <b>개발제한구 역을 제외</b> 한 481만㎡를 공원 구역으로 지정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토지주 권익보호	(신설)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함 가. 공원구역 내 재산세 적정수준 감면 나. 공원구역 내 토지의 보상 다.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 도시공원 91km<sup>2</sup> 중 약 76%(69km<sup>2</sup>)를 공원구역으로 변경

## 2) 변경 사유

- 우리시는 2020. 6. 3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종합대책 (‘18.4.29.)을 수립하였으며,
- 그 세부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토지는 도시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다. 공청회 개최

### 1) 공청회 개황

- 개최일시 : 2019. 7. 18. 16:00~18:35 (신문공고 7.4.~7.17.)
- 개최장소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콘서트홀(강북구 번동)
- 참석인원 : 약 350명
- 주요의견
  - 공청회장에서 발표 및 서면의견 중 찬성 의견은 1건이 있음
  - 의견제시(제출)자 다수는 대부분 공원구역 지정에 반대
    - ⇒ 실효 회피의 수단으로 공원구역 지정은 현재판결 부정이라는 의견
    - ⇒ 공원구역 지정 후 전체 토지 보상 약속은 신뢰 곤란하다는 의견
  -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토지주들과 소통을 요구하는 의견 등
  - ※ 기타 보상 및 비오톱 제도 폐지 등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직접 관계없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음

### 2) 접수의견 반영 여부

-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사항은 없음.
- 다만, 토지주들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다음의 요구사항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공원에서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은 전문가 자문 등 검토·논의 후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예정
  - 정책 결정과정에서 토지주들과 소통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 시민들과 소통방안 지속 강구 예정 등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이 재 호)

### 1) 제안경위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법정계획으로 서울시는 2015년에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공원녹지법」 제8조제3항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을 위해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것임.

### 2)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

- 첫째, 당초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는 도시자연공원 뿐 아니라 근린공원도 필요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 둘째, 당초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도시자연공원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는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 셋째, 서울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하더라도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해 재산세 감면, 토지의 보상,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하였음. (본 보고서 2쪽 일부변경의 내용 참고)

### 3) 주요 검토의견

####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시민 공감대 확산으로 도시공원 확보운동, 자원확보를 통한 보상추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임.
- 「공원녹지법시행령」 제25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립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 즉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생태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지정하며<sup>1)</sup>, 공원의 자원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환경성검토’, 도시민의 여가 수요부문을 판단하기 위한 ‘이용성 검토’, 이미 수립된 관련계획 등과의 정합성 파악 및 정책적 판단을 위한 ‘계획적 정합성 검토’를 통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임<sup>2)</sup>.
- 그러나 기존의 공원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제되는 전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면 앞에 언급된 3가지분야 검토 없이 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공원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1)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375쪽

2)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376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정에 관한 기준

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 특히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나) 공청회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

- 「공원녹지법」 제8조제1항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본 조항에 근거하여 2019년 7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에 찬성의견은 1건에 불과 하였으며, 의견제시자 대다수는 공원구역 지정에 반대를 하였음.
- 공청회 의견수렴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구역 지정 후 전체 토지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서울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토지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불만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견제출자

대부분이 공원구역 지정에 반대하였음. (의견청취안 2쪽 참고)

- 시민들의 의견이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서울시 토지보상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는 수용곤란이 대부분임(의견청취안 4~8쪽 참고). 서울시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없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였음.
-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없이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은 단순히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시의회 의견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계획, 구역지정 후 관리계획, 매수청구에 따른 향후 집행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할 것임.

#### 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 법 제8조 제2항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지난 6월 개최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기에 앞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기 위해 최선의 대안인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된 공원녹지계획 변경안 통과되었음.
- 공원구역 지정으로 공원을 보전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만 고려하고 있을 뿐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한 재정적 검토, 행위제한의 도시계획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 금회 변경안에는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488호)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지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보전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경우 관리운영, 유지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8호)

2-2-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할 때에는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생태·자연도, 임상도, 녹지자연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3)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 또는 구역은 가능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복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이외에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될 예정임. 이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반하는 기본계획 변경이므로 개별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동의

-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시 사유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
- 주민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
- 사유지 보상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에 관하여 관계된 상임위원회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
- 국토교통부 지침과 같은 법령에 준하는 방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997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안건명 :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

※ 이하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약칭함

## 2.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의 내용

###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의 변경

※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공원구역) 기본계획 정비의 내용

구분	현행	정비안
대상공원	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원구역 지정
GB 제외여부	도시자연공원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481만㎡를 공원으로 계획)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토지주 권익보호	(신설)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함 가. 공원구역 내 재산세 적정수준 감면 나. 공원구역 내 토지의 보상 다.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 3. 정비사유

- 우리시는 2020. 6. 3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종합 대책('18.4.29.)을 수립하였으며,
- 그 세부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토지는 도시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음
-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4.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안)

- 도시공원 91 $km^2$  중 약 76%(69 $km^2$ )를 공원구역으로 변경

※ 계획도면(개략) 별첨 (실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 5. 공청회 개최결과

- 개최일시 : 2019. 7. 18. 16:00~18:35 (신문공고 7.4.~7.17.)
- 개최장소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콘서트홀(강북구 번동)
- 참석인원 : 약 350명
- 주요의견

- 공청회장에서 발표 및 서면의견 중 찬성 의견은 1건이 있음
- 의견제시(제출)자 다수는 대부분 공원구역 지정에 반대
- 실효 회피의 수단으로 공원구역 지정은 현재판결 부정이라는 의견
- 공원구역 지정 후 전체 토지 보상 약속은 신뢰 곤란하다는 의견
-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토지주들과 소통을 요구하는 의견 등

※ 기타 보상 및 비오톱 제도 폐지 등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직접 관계없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음

## 6. 접수 의견 반영 여부

-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안에 반영된 사항은 없음.
  - 다만, 제도개선 등 다음의 요구사항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공원에서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은 전문가 자문 등 검토·논의 후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예정
    - 정책 결정과정에서 토지주들과 소통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 시민들과 소통방안 지속 강구 예정 등
- ※ 접수 의견 별 검토결과 별첨

## 7. 관련부서 협의결과 : 의견 없음

## 8. 기 타

-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일정
  - 2019. 8월 : 의회의견 청취
  - 2019. 9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공고)
-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일정
  - 2019. 9월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 2019. 11월 : 의회의견 청취
  - 2019. 12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공고)

붙임 : 1. 접수 의견 및 검토결과 1부.

2.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도(개략) 1부.

## 접수의견 및 검토결과

○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

구 분	접수의견 및 조치 계획 · 결과	의견 제출자
현장접수 (공청회)	<p><b>의견)</b> 공원내 토지의 일부를 대지로 변환하여, 그 대지와 나머지 토지를 대토하는 방식 제안</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적 한계와 녹지훼손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li> </ul>	공 청 회 발 언 시 성 명 을 밝 히 지 않 음
	<p><b>의견)</b>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토지주들과 충분한 소통 및 정보 제공 요청</p> <p><b>검토) 적극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를 포함한 주민들과 소통방안 지속적 강구 예정</li> </ul>	
	<p><b>의견)</b> 공원구역으로 지정 후 사유지 전체 보상하겠다는 계획 신뢰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일 때도 보상 안 해주었는데, 보상의무가 없는 공원구역으로 지정 후 보상 약속 신뢰 곤란</li> <li>· 17년간 5% 보상했는데, 전체를 보상하려면 300년 기다려야 함</li> <li>· 사유지 보상 관련 필지, 보상시기 등을 구체화한 계획을 제시해야 보상하겠다는 약속 신뢰 및 공원구역 지정 동의 가능</li> </ul>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지 전체 보상은 2018. 4. 5. 기자설명회를 통하여 발표한 것으로 이는 시민과의 약속임</li> <li>-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도 역시 서울시의 보상 의지의 표현임</li> </ul>	
	<p><b>의견)</b> 실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음</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법규정에 의한 것임</li> <li>- 우리시 재정여건, 급변하는 기후 및 도시환경, 실효 후 녹지 보전과 지속적인 보상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임</li> </ul>	

(표 계속)

구분	접수의견 및 처리결과(조치계획)	의견 제출자
현장접수 (공청회)	<p><b>의견)</b> 공원구역은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므로, 법률개정(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행정청의 직권감면 대상임</p> <p><b>검토) 수용근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직권감면 대상은 아님</li> </ul>	이○열
	<p><b>의견)</b> 영구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공원구역 지정 절대 반대</p> <p><b>검토) 수용근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임</li> <li>- 우리시 재정여건, 급변하는 기후 및 도시환경, 실효 후 녹지 보전과 지속적인 보상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임</li> </ul>	성○희 외51 (성명 미표명자 미계상)
	<p><b>의견)</b> 수목장을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p> <p><b>검토) 적극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 등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 등 노력 예정</li> </ul>	정○영
서면접수	<p><b>의견)</b> 서울의 공원은 사실상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된 공원으로 보아야 함</p> <p><b>검토) 수용근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 인가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의 조치가 있어야만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토부 도시정책과-5945, '17.6.19.)</li> </ul>	이○열
	<p><b>의견)</b> 공원구역 결정 전 보상 혹은 공원해제 요청. 공원확보 의지에 신뢰를 보이려면 보상의지도 보여주어야 할 것</p> <p><b>검토) 수용근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시 재정여건, 급변하는 기후 및 도시환경, 실효 후 녹지 보전과 지속적인 보상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임</li> <li>-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청구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에 노력 예정</li> </ul>	신○성 외52

(표 계속)

구 분	접수의견 및 처리결과(조치계획)	의견 제출자
서면접수	<p><b>의견)</b> 어떤 토지는 보상을 해주고, 어떤 토지는 공원구역으로 결정하여 영구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시 재정형편상 선택적 보상은 불가피</li> <li>-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후에도 매수청구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에 노력 예정</li> </ul>	권○준 외33
	<p><b>의견)</b> 보상받은 사람은 세금에서 해방되고, 보상 못받고 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영구히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불공평(재산세 50% 감면은 대책이 될 수 없음)</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재산세 50% 사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li> <li>- 관련 법률 개정 도는 시세 감면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감면혜택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li> </ul>	김○권
	<p><b>의견)</b>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계획을 토지주들에게 공개 요청</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검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며,</li> <li>- 내부 검토과정이 완료되면,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li> </ul>	이○환 외32
	<p><b>의견)</b> 근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시 재정여건, 급변하는 기후 및 도시환경, 실효 후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보상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임</li> <li>-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해 나갈 예정</li> </ul>	신○성 외52
	<p><b>의견)</b> 토지보상이 미루어지는 기간에 상응하는 피해 보전이 있어야 먼저 보상 받은 토지주들과 비교하여 공평할 것임</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시는 보상 우선순위 선정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고 있음</li> <li>- 보상 시점의 차이로 인한 피해는 인정 곤란</li> </ul>	김○권 외1

○ 보상, 비오톱 등 관련 비직접적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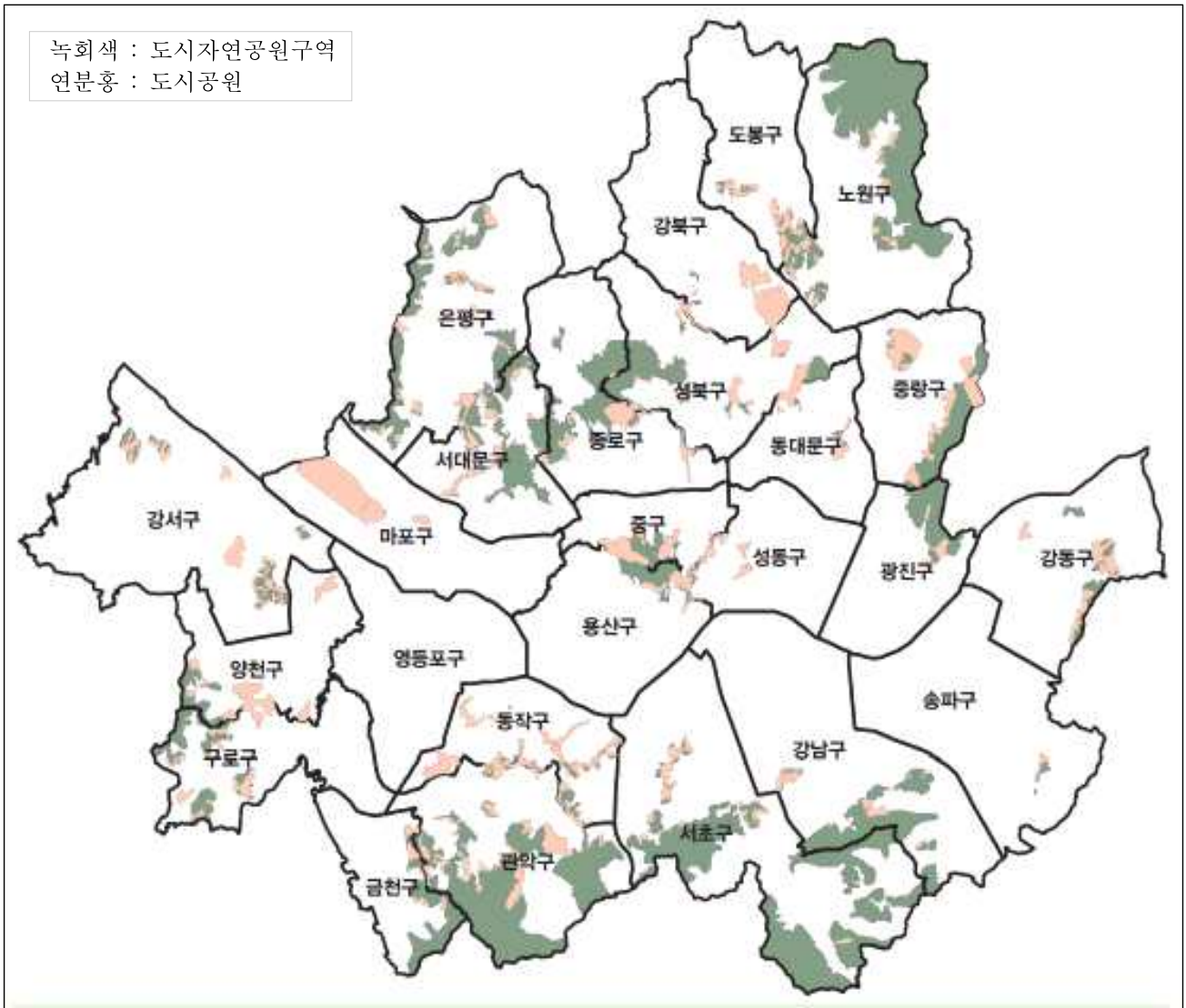
구 분	접수의견 및 처리결과(조치계획)	의견 제출자
공청회 접수의견	<p><b>의견)</b> 참나선원(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낙성대 지구) 보상 반대</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로서 기 집행 완료된 도시공원의 중심부에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거나 공원해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li> <li>- 다만, 최근 열람공고 의견 접수(2019.7.31.)되어 현재 검토 중</li> </ul>	미상 (공청회)
	<p><b>의견)</b> 까치산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제안에 대한 불허한 사유 공개 요청</p> <p><b>검토) 기 처리된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까치산근린공원 특례사업 제안 미수용 사유는 2016년 당시 제안자에게 기 회신되었음</li> </ul>	미상 (공청회)
서면접수	<p><b>의견)</b> 까치산근린공원의 경우 일부(17%)만 보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전체를 보상해 주든가 공원에서 해제 요청</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은 필지 기준이 아닌 현황과 이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기에, 일부(17%) 분할보상은 불가피</li> <li>- 대상필지의 전체 보상 혹은 해제는 수용 곤란</li> </ul>	신○성 외53
	<p><b>의견)</b> 토지의 일부만을 보상하여 나머지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분 보상에 반대</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 대상지는 필지 기준이 아닌 현황과 이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기에, 일부 분할보상은 불가피함</li> </ul>	장○임 외52



(표 계속)

구 분	접수의견 및 처리결과(조치계획)	의견 제출자
	<p><b>의견)</b>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비오톱 제도 폐지 요구</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작성되며 도시 생태현황을 나타내는 공간정보로서 토지이용을 직접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li> <li>- 개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경사도, 입목축적도와 같은 허가기준 중의 하나이며,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 관리를 위하여 유지 필요</li> </ul>	<p>신○성 외 57</p>
	<p><b>의견)</b> 공청회 관련 개별적 공지가 없었고, 공무원과 경비인력이 공청회장 상당수를 채워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토지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공청회는 무효임</p> <p><b>검토) 수용곤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청회는 14일 이상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모든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였음(개별적 공지는 법령상 규정 없음)</li> <li>- 경비인력은 만일의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였음</li> </ul>	<p>성○희 외 51</p>

##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도(개략)



※ 본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도(개략)는 배치계획을 개념적 형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략도면으로, 실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에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의하므로, 본 계획도와 달라질 수 있음